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이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 및 해지】

-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 【입금제한】

- ① 이 예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공무원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입금하는 별정우체국연금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법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별정우체국법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43조, 민사집행법 제 195조 제 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2조(이하 “관련 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한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대상금액 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한다.
- ④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된다.

제8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이 압류되지 않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다.
- ②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양도, 질권 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하다.
- ③ 이 예금은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p,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10조 【이자계산】

-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1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2조 【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당월에 공무원 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는 제외)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4.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3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